

수수료(제67조제1항관련)

구 분	금 액
1.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	
-종합유선방송사업	20만원
-중계유선방송사업	10만원
2.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	20만원
3. 법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	
-방송채널사용사업	10만원
-전광판 방송사업, 음악유선방송사업	5만원
4.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	20만원
5.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	20만원
6.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	20만원
7. 법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	5만원
8.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, 변경승인, 변경등록	
-종합유선방송사업의 변경허가	10만원
-중계유선방송사업의 변경허가	5만원
-방송채널사용사업의 변경등록	5만원
-방송채널사용사업의 변경승인	10만원
-법 제9조제6항 및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위 성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변경승인	10만원
-전광판방송사업, 음악유선방송사업, 전송망사업의 변경등록	2만5천원
8의2. 법 제15조의2에 따른 변경승인	10만원
9.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	
-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	10만원
-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	2만5천원
10.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승인	10만원
11. 삭제 <2022. 6. 28.>	
12. 삭제 <2024. 12. 31.>	